

문서번호	경영지원실-	대리	기획감사팀장	실장	문화관광본부장	이사장
보존년한	준영구	이 승 환	이길호	김영	가관석	김성호
보고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환경복지본부장 총무회계팀장	김민석 이길호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安東市施設管理公團
Andong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2020년 인권 영향평가 결과 보고

I 추진근거

○ 추진배경

-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선도적 역할 요구
- 사회적가치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필요성 증가
- 구성원 인권신장 및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체계 확립

○ 근거

-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690(2018.10.29.)]
- 「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32조(인권영향평가)
- 공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경영지원실-7109(2020.12.08)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인권영향평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 점검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과정을 통해 기관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II 추진개념

○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 절차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인권에 부정적인 요인을 도출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공단의 인권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실사)를 위한 핵심 도구

-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창출로의 기회로 인식

○ 평가대상

- 기관운영(기업활동 전반) 및 주요사업(특정사업)

III 추진경과

○ 20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항목	답변결과	지 적 사 항	개 선 내 용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보완필요	인권정책선언은 회사 내외부 및 이해관계자 들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구성	공단 인권정책선언 및 인권경영 이행 지침 내용 이해관계자 공유 및 인권과 관련한 업무진행시 가능한 많은 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
산업안전 보장	보완필요	감정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 보호 환경 강화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련 교육 실시 및 본인 요청시 심리상담치료 지원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아니오	협력회사 및 각종계약 체결시 인권보호 존중 에 관한 내용을 서면 으로 요구	공단 비즈니스관련자와 각종 계약 체결시 공단 인권관련 내용 안내 및 인권존중서약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안내

○ 2020년도 인권경영 추진

구 분	추진 내용					
2019년 인권영향 평가결과 환류 ↓ 2020년 인권영향 평가지표 변경·추가	2019년 기존 지표(36개)		2020년 변경 지표(54개)			
	NO	체크리스트(지표수)	NO	추가 지표	반영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6)	1	인권영향평가 준거기준 수립	1-4	
	2	고용상의 비차별(4)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1-5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3	비즈니스 관련자 인권침해 대응	1-6	
	4	강제노동의 금지(2)	4	직장내괴롭힘, 갑질, 성희롱 예방	1-7	
	5	아동노동의 금지(2)	5	채용관련 불필요 조건 명시금지	2-2	
	6	산업안전보장(8)	6	복리후생제도 차별 금지 노력	2-5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	7	정년보장 및 남녀차별금지	2-6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8	여성노동자 부당대우 금지	2-7	
	9	환경권 보장(3)	9	만 18세미만 채용가능	2-8	
	10	소비자 인권보호(2)	10	초과근무시노동자 동의 필수	4-3	
			11	사전통지에 따른 퇴직보장	4-4	
			12	채용시 신분관련 서류검토 철저	5-3	
			13	건강위협요소 외부고지	6-8	
			14	즉시 통보가능 연락 체계 구축	9-3	
			15	환경훼손이나 오염 최소화	9-4	
			16	고객정보 책임자 지정	10-3	
			17	고객정보이용 목적 외 사용금지	10-4	
			18	사회적 약자 안전조치 마련	10-5	
이행 및 적용 확산	· '19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파[경영지원실-1175(2020.02.24.)]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교육[경영지원실-5562(2020.10.05)]					
				· 일 시: 2020. 10. 06(화) 15:00 ~ 16:00 · 장 소: 공단 본부 회의실 · 검토내용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 적정성 -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별 증빙자료 제출 협의 - 향후 인권방향 추진방향 설정		
	체크리스트 검토			※ 코로나 19관련, 방역수칙 준수 및 인원 최소화		

구 분	추진내용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경영지원실-7109(2020.12.07.)]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경영지원실-7225(2020.12.08.)]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2020년 12월] · '20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전파 및 공유[2021년 1월]

III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0. 12. 09.(수) ~ 12. 22.(10일간)
- 평가방법: 위원별 서면 체크리스트 작성(코로나 19관련 서면회의 개최)
- 평가내용: 공단 경영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영향도 평가
- 평가기준: 지표별 추진실적의 충족 정도를 평가(정성적)
- 평가절차

평가지표설정 ⇨ 평가자료 검증 ⇨ 인권경영위 제출심의 ⇨ 결과보고

- 평가위원: 총 6명(인권경영위원회)
 - 내부위원: 4명(본부장 2명, 노동조합대표 2명)
 - 외부위원: 2명(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기준
1	내부위원	문화관광본부장	당연직
2		환경복지본부장	당연직
3		안동시설공단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제1노조
4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회계감사	제2노조
5	외부위원	변호사 권오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6		노무법인경북 대표	노무사

- 평가항목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 54개 지표(전년대비 18개 증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구 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0)	권*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고용상의 비차별(9)	권*인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김*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4	강제노동의 금지(4)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5	아동노동의 금지(3)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6	산업안전보장(9)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2)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9	환경권 보장(5)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10	소비자 인권보호(5)	김*환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5개 분야 20개 지표(전년대비 8개 증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위원	소 속	주관부서
휴양시설 (단호휴양팀, 계명산휴양팀)	1	운영 공정성 확보(4)	권*인	외부위원	기획감사팀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5)	김*석	내부위원	기획감사팀
	3	이용 안전보장(4)	김*재	외부위원	총무회계팀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5)	김*일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김*환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5	지역 환경보호(2)	김*술	내부위원	총무회계팀

※ 주요사업선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공단의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사업장이 상당기간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지역민과 외부인의 이용이 많은 휴양시설임을 감안,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 세부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위원이 체크리스트 작성
 - (1차) 평가: 평가 지표별 담당위원(인권경영위원)이 실시
 - (2차) 평가: 1차 평가를 토대로 전체위원 공유 및 최종평가

※코로나 19 예방에 따른 서면 회의 개최

- 체크리스트 내 지표 문항 별 5단계로 부여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지표별 1 ~ 8등급 부여
- 평가점수: 체크리스트 내 문항 부여점수

구 분		판 단 기 준	조 치 내 용
판단	점수		
예	2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속적 모니터링
보완필요	1	· 지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 향후 보완 필요
아니오	0	· 지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진전이 없는 경우	· 추진계획 필요
정보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의 실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정보 수집계획 필요
해당없음	제외	· 지표 요구조건이 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 등급체계: 등급별 백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율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80점 미만~ 70점	70점 미만~ 60점	60점 미만~ 50점	50점 미만~ 40점	40점 미만~ 30점	30점 미만~ 20점	20점 미만~ 0점

IV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영향평가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0)	9	1			
2	고용상의 비차별(9)	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4)	4				
4	강제노동의 금지(4)	4				
5	아동노동의 금지(3)	3				
6	산업안전보장(9)	8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	2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3)	2		1		
9	환경권 보장(5)	4	1			
10	소비자 인권보호(5)	3	2			
합 계		48	5	1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2.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	3.3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
	6	산업안전보장	94.4	0.6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5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66.6	-
	9	환경권 보장	90	△10
	10	소비자 인권보호	80	△20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2.6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 보장]과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보호] 분야를 강화할 것을 권고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 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건
1	권*인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1-6)	· 인권침해는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관련자 등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매뉴얼 수립이 요구됨.
6	김*술	산업안전 보장 (6-3)	· 공단은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보건상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하나 관련 내역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들이 일부확인됨. 현재 공단 인력 편제 및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8	김*석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3)	· 공단 사업장 중 사업장명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시설명의 서체와 관련해 저작권 등 재산권 침해 우려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와 인식 확산이 필요함.
9	김*술	환경권 보장 (9-3)	· 현재 공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형식적 비상 연락망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즉시 통보 등 실질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등 자원 소모가 커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인 비상연락망 운용대비 태세 훈련 실시로 자체 경보체계 강화가 필요함.
10	김*일	소비자인권 보호 (10-1, 10-3)	· 공단에서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관기간이나 기타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며 기타 개별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부재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됨.

< 기관 인권영향평가 총평 >

- ▶ 공단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인권이슈를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지역민을 포괄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공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이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선포, 구체철차 마련 등 인권경영 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였음.
- ▶ 평가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되 금년도는 자가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좀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함.
- ▶ 공단은 10개 이행원칙 54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예” 및 “보완필요”인 지표개수가 53개로 기관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특히, 작년에 비해 지표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점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점은 인권경영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제도가 공단 전체에 비교적 잘 뿌리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지표 발굴시 공단 인권경영의 사각지대 등 사전 정보제공이 미흡함에 따른 지표 발굴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향후 적극적인 부정적 지표 발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더불어 소비자 인권보호 및 환경권 보장 신설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2. 주요사업 영향평가

□ 평가 결과 점수

구분	평가분야(지표수)	평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운영 공정성 확보(4)	4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5)	3	2			
3	이용 안전보장(4)	4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5)	4	1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2)	2				
합 계		17	3			

□ 종합 의견

결과 그래프	점수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3. 이용안전 보장 87.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table><tr><th>NO</th><th>평가지표</th><th>환산 점수</th><th>지표별 전년대비</th></tr><tr><td colspan="2">평 균</td><td>91.5</td><td></td></tr><tr><td>1</td><td>운영의 공정성 확보</td><td>100</td><td>-</td></tr><tr><td>2</td><td>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td><td>80</td><td>5</td></tr><tr><td>3</td><td>이용안전 보장</td><td>87.5</td><td>△12.5</td></tr><tr><td>4</td><td>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td><td>90</td><td>△10</td></tr><tr><td>5</td><td>지역주민 및 환경보호</td><td>100</td><td>-</td></tr></table>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5	3	이용안전 보장	87.5	△12.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1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NO	평가지표	환산 점수	지표별 전년대비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5																										
3	이용안전 보장	87.5	△12.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90	△1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1.5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이용안전보장],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 주요 지표별 권고 의견

항목 번호	평가위원	평가분야 (지표번호)	의 건
2	김*석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보장 (2-2, 2-4)	· 공단 휴양시설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구, 계단 중 BF인증 규격을 충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향후 시설 보수 및 개선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김*재	이용안전 보장 (3-1)	· 휴양시설내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긴급구호장비 부재로 인해 계명산휴양림의 경우 긴급상황발생 시 환자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4	김*환 김*일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4-1)	· 일부 휴양시설의 경우 휴게시간 혹은 당직근무 시 전용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해당 부분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할 것.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평 >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금년 코로나 19와 관련해 대부분의 서비스 시설들이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사업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평소 외부인들의 이용이 많은 휴양시설 2곳(단호휴양팀, 계명산휴양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표수는 지난해 12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으며 자가점검 형식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
- ▶ 공단은 5개 이행 원칙 20개 지표 중, “예” 및 “보완필요” 지표는 20개로 운영 전반에 인권경영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 다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시행 및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니오’로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발굴·반영하여 인권리스크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금년도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체의 사업장 수에 비추어 봤을 때 보다 많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며 구성원들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전체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계획에 근거한 업무추진 등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V

향 후 계 획

○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공유 : 2021년 1월

- 공단 소식지 및 타 공공기관 전파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협의

▷ 실질적인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평가제도 개선 : 2020년 2월

- 체크리스트 지속 발굴 및 적용 등
-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평가 노하우 강화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2021년 2월

- 금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계획 수립
- 인권경영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선임(외부위원 1명 추가 고려)

▷ 외부위원 2명 → 3명

- 붙임
1. 기관운영 영향평가 세부결과
 2. 주요사업 영향평가 세부결과
 3. 기관운영 영향평가 점수표(원본)
 4. 주요사업 영향평가 점수표(원본)

[붙임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평가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2.6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5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보장	94.4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66.6
9	환경권 보장	90
10	소비자 인권보호	80

□ 평가 결과표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 권 경 영 체 제 의 구 축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3	인권정책 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4	인권영향평가의 준거 기준은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의 인권 규범으로 한다.	√					
	5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한다.	√					
	6	공단 임직원외 외부 비즈니스 관련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 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한다.		√				
	7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은 노동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 한다.	√					
	8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9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고하고 있다.	√					
	10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소 계			9	1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고 용 상 의 비 차 별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2	공단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노동자의 승진, 전보, 교육에서 남녀를 차별을 하지 않는다.	√					
	4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					
	5	공단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복리후생제도상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					
	6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며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7	공단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8	공단은 기능인재추천채용 시 만 18세 미만이라도 채용 연령에 포함한다.	√					
	9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소 계			9					

항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결사 및 단 체 교 섭의 자유 보장	1	공단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2	공단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3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4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소 계			4					
4. 강제 노동의 금지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2	공단은 불필요한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3	공단은 사용자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다.	√					
	4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통지 후 공단을 퇴사할 수 있다.	√					
소 계			4					
5. 아동 노동의 금지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2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 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3	공단은 노동자 채용 시 채용서류상 노동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 후 고용하며 신분위조 예방을 위한 증명서 원본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					
소 계			3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 산업 안전 보장	1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2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3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의 경우 도덕상,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				
	4	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5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					
	6	공단은 종업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7	공단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8	공단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외부에 고지하고 개선노력을 한다.	√					
	9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소 계			8	1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회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2	공단은 협력회사와 공공조달 및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소 계			2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 지 역 주 민 의 인 권 보 호	1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고 협의한다.	√					
	2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관련법령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준수한다.	√					
	3	공단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			√			
소 계			2		1			
9. 환 경 권 보 장	1	공단은 재난 및 기타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공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상위 및 유관기관, 외부 용역회사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				
	4	공단은 공단활동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소 계			4	1				

항 목	지 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1	공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물의 이용정보, 가격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	√					
	3	공단 각 부서마다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4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5	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소 계			3	2				

[붙임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결과

□ 평가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점수
평 균		91.5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보장	80
3	이용안전 보장	87.5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 보호	90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	100

□ 평가 결과표

분야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운영의 공정성 확보	1	공단은 휴양시설을 이용자의 권리 침해(차별, 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2	휴양시설은 이용고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					
	3	공단의 휴양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공단 휴양시설은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소 계			4					

분야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보장	1	공단의 휴양시설 각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2	공단 휴양시설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되어 있다		√				
	3	공단 휴양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안내도(안내문, 리플릿 등)가 설치되어 있다	√					
	4	공단 휴양시설은 휠체어 등 편의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				
	5	휴양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소 계			3	2				

분야 3. 이용안전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이용안전 보장	1	휴양시설은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함 및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				
	2	휴양시설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					
	3	주차장 및 시설 사각지대에 CCTV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4	휴양시설에 소화기, 소화수 등 안전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					
소 계			3	1				

분야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보호	1	숙직자 및 청소원 등의 휴게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2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용품들이 구비 및 지급되어 있다.	√					
	3	노동자들은 법적 근로시간 이외에 무리한 초과 근로를 강요받지 않는다.	√					
	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5	휴양시설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					
소 계			4	1				

분야 5. 지역주민 환경보장(환경기초시설)

항 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지 역 환 경 보 호	1	휴양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					
	2	휴양시설은 운영상의 이유로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는다.	√					
소 계			2					

[붙임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점수표(원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1.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2019.3) - 인권경영헌장선언 및 공포
	2. 인권정책선언은 회사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					· 인권의식 실태조사(2018.12) - 공단 직원대상 인권관련 인권의식 실태 파악 - 인권경영 주요정책방향과 추진과제 기초자료 활용
	3. 인권정책 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					· 인권경영선포식 · 인권경영 보도자료 배부 및 관련내용 홈페이지 게시 · 전국 타 공공기관 관련내용 확산 및 공유
	4. 인권영향평가의 준거기준은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의 인권규범으로 한다.	✓					· 인권영향평가 기준시 국제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규범 준수 - 사회적 약자 코로나19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인권영향평가 기준 설정
	5.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한다.	✓					· 이해관계자, 유관기관에 인권경영관련 안내문 송부(2020. 12) · 유관업체 업무계약시 인권존중 서약서 징구(2020. 12)
	6. 공단 임직원 외 외부 비즈니스 관련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 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		✓				· 현재 비즈니스 관련자 등 외부로부터의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 미비
	7.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은 노동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통보(2020. 7) · 성희롱 고충 상담센터 및 상담원 운영
	8.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					· 인권경영 전담팀 구성(2018. 11) ·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2018. 11) ·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인권경영헌장 제정(2018. 12)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2019. 1)
	9.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보고하고 있다.	✓					· 공단 인권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2019. 12)
	10.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					· 고충상담창구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권 오 인

권오인

▲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고용상의 비차별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실시 · 채용관련 부패영향평가 실시 - 채용공고문, 자격, 선발방법, 적정성 등 검증
	2. 공단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전 분야 블라인드 채용 실시 - 개인 신상정보 배제
	3. 공단은 노동자의 승진, 전보, 교육에서 남녀를 차별을 하지 않는다.	✓					· 규정 명시
	4.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완료(기간제→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
	5. 공단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복리후생제도상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 정책 강화 - 가족수당 지급 등 · 무기계약직 급여체계 개선 방안(2020. 12)
	6.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며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규정 명시
	7. 공단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 규정 강화(근로기준법,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동일 적용) - 여성근로자 권리강화(야간, 휴일근무, 난임치료 등)
	8. 공단은 기능인재추천채용 시 만 18세 미만이라도 채용 연령에 포함한다.	✓					· 규정 개정(기능추천채용제 연령 제한 완화)(2020. 12)
	9.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는다.	✓					· 규정 개정(채용자격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삭제)(2020. 12)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권 오 인

권오인

▲ 2. 고용상의 비차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 표 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 공단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 복수노조 설립 · 노사 간 자율결정원칙 보장 및 교섭대표 노조 선정
	2. 공단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 노조 임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보장 · 단체협약 진행
	3.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 단체협약 및 실무회의 진행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시 선거를 통한 노동조합 위임
	4.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 단체협약 체결 진행 ·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균 일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 표 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강제노동의 금지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					· 강제노동 금지 준수
	2. 공단은 불필요한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력 - 유연근무제도 시행 - 모성보호 정책 시행
	3. 공단은 사용자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다.	○					· 모든 초과근무 시 당사자 동의 필수
	4.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전 통지 후 공단을 퇴사 할 수 있다.	○					· 관련 규정 명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동 재



▲ 4. 강제노동의 금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아동노동의 금지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취업규정 명시(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예외)
	2.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 해당없음
	3. 공단은 노동자 채용 시 채용서류상 노동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 후 고용하며 신분위조 예방을 위한 증명서 원본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					· 각종 신분 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동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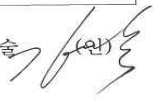


▲ 5. 아동노동의 금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6. 산업안전 보장	1.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보건직 채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2.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전사적 근무환경개선 가이드라인 설정
	3.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의 경우 도덕상,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				·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 · 기타 보건 상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인력 조정이 불가한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4. 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보호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 직무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휴게시설 및 복지관련 시설 확충(샤워실 등)
	5.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					· 부서별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구비 · 지속적인 산업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건 담당자에 의한 시설 점검 강화
	6. 공단은 종업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보호장비 구비 완료 · 정기적 산업안전 교육 실시(1회/월)
	7. 공단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인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 매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비 격년 지원 ·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8. 공단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외부에 고지하고 개선노력을 한다.	✓					·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환경시설 오염물질 정보 게시 · 오염원에 대한 외부분석 실시로 객관성 확보
	9.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절차 안내 · 업무담당자 실무 지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재 술



▲ 6. 산업안전 보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 표 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협력 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청구 - 입찰공고문, 계약체결시 요구
	2 공단은 협력회사와 공공조달 및 계약 시, 인권보호 준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 공단 이해관계자 및 외부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해 인권준중 에 관한 안내문 발송(2020.12) - 계약체결시 인권준중 서약서 청구 계획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제 석 

▲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 표 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 공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권에 부정 적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고 협의한다.	✓					· 신규사업 및 각종 대형공사 진행 전 주민 공청회실시 · 공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보호 안내 - 시설에 인권경영 안내문 게시 -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 접수(익명제보시스템 도입 예정)
	2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준수한다.	✓					· 관련 규정 준수 · 공단 사업에 시민참여 유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3 공단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			✓			· 일부 시설의 간판등 외부노출 시설명에 대한 사채와 관련해 저작권 등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며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 필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제 석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9. 환경권 보장	1. 공단은 재난 및 기타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 재난상황 종합 관리계획 수립 · 재난상황 보고체계 일원화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사업장별 재난안전 행동 매뉴얼 표준화 ·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실시 · 화재, 인명구조, 복합재난 등
	3. 공단은 비상상황 발생 시 상위 및 유관기관, 외부 용역회사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상황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즉시 알람 등 전자시스템 구축미비로 상황 전파시 시간 소요 → 정기적 상황전파 훈련 필요
	4. 공단은 공단활동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하수도 수질관리 최적화를 위한 TMS 위탁용역 실시 · 일일 자체 유입수·배출수 검사 · 사업장별 자연보호관련 업무 추진 · 식목행사 실시 · 자연정화캠페인 실시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					·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질, 공기질 등 환경정보 외부 제공 · 정보공개창구를 통한 각종 민원 응대 · 내부망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재 술

▲ 9. 환경권 보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0. 소비자 인권보호	1. 공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방침게시 ·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책임자 지정 등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연계
	2. 공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물의 이용정보, 가격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	✓					· 조례에 근거한 이용요금 홈페이지 및 각 시설 창구에 게시
	3. 공단 각 부서마다 고객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				· 공단 및 각 사업장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완료 · 개인정보관련 온라인 교육 수료 · 각 개별 사업장 내외부에 개인정보책임자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등 개선 필요
	4. 고객 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개인정보보호 방침 준수 · 목적 달성 이후 파기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5. 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					· 휴양시설 안전시설 설치 · 철압측정계 및 심장제세동기 비치(온천) · 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온천, 휴양림, 캠핑장) · 예비 휠체어 운용(온천) · 안전주의의무 등 사고예방 관련 방송 송출(온천) · 기타 일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관련 민원 발생시 적극 대응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충 환

▲ 10. 소비자 인권보호

[붙임4] 주요사업 영향평가 점수표(원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운영의	1. 공단은 휴양시설을 이용자의 권리침해(차별, 제약 등) 없이 운영하고 있다.	✓					· 휴양시설 이용 조례 및 약관을 따르며 차별 요소 배제 · 권익위 권고사항 분기별 반영노력
	2. 휴양시설은 이용고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설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					· 시설이용 안내 및 조례에 근거한 이용요금을 홈페이지 및 각 시설 개별 장소마다 게시
공정성	3. 공단의 휴양시설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및 매뉴얼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					· 권 직원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매뉴얼 비치 · 성희롱 고충 상담원 배치
확보	4. 공단 휴양시설은 이용객의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고객센터함 비치 · 홈페이지 불편사항 접수창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권 오 인 (인)
권오인

▲ 1. 공정운영(휴양시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사회적 약자 이용 편의 보장	1. 공단의 휴양시설 각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 계명산휴양림, 단호휴양림 휠체어 이용 가능 - 지형 및 시설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장소는 사용불가
	2. 공단 휴양시설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규격에 맞게 화장실 및 출입구, 계단 등의 시설이 되어 있다		✓				· 각 휴양시설 중 계단 등 일부 시설이BF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이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추진 필요
	3. 공단 휴양시설은 외국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안내도(안내문, 리플릿 등)가 설치되어 있다	✓					· 시설 입구 및 각 개별시설마다 안내문과 리플릿 비치 · 각종 안내문 및 전시작품 등 영문표기 혼용을 통해 외국인 이용객 편의 제공
	4. 공단 휴양시설은 휠체어 등 편의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				· 휴양시설의 내외부 지형 및 기타 시설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현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턱을 없앤 객실을 운영하는 등 시설관련 편의시설 확충은 확인되나 휠체어, 목발 등 개별 편의장비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5. 휴양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재 석 김재석

▲ 2. 사회약자 이용편의 보장(휴양시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3. 이용안전보장	1 휴양시설은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함 및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				· 휴양시설 내 구급함은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심장제세동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휴양시설은 난간 및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다.	9					· 휴양시설 내외부 위험지역에 대한 난간 및 안전울타리 설치 확인
	3 주차장 및 시설 사각지대에 CCTV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9					· 주차장 및 시설 사각지대 CCTV 운용중
	4 휴양시설에 소화기, 소화수 등 안전장비가 비치되어 있다.	Q					· 각 부서별 소방계획 수립 실시 및 소방안전점검을 실시중이며 소화기, 소화수, 소화사 등 방화물품 상시비치 확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동 재

▲ 3. 이용안전보장(휴양시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지표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1 숙직자 및 청소원 등의 휴게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 휴게 공간은 마련하고 있으나 배치 등 전용 휴게 시설로써의 기능이 부족함
	2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용품들이 구비 및 지급되어 있다.	✓					· 직원 안전용품(근부목, 안전화, 안전모 등) 비치 완료
	3 노동자들은 법적 근로시간 이외에 무리한 초과근로를 강요받지 않는다.	✓					· 주 52시간 법적 근로시간 준수
	4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련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갑질행위 금지 지침 마련 및 관련 교육 실시 · 갑질관련 감사 실시 및 조치
	5 휴양시설내에 근무하는 노동자중 무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					· 규정에 의한 차별금지 명시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균 일
김 충 환

▲ 4. 노동자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휴양시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 체크리스트

항 목	지 표 명	답변결과					추진실적 및 관련근거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5. 지 역 주 민 및 환 경 보 호	1 휴양시설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					· 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 단호휴양림 백조공원 폐기물 안동시매립장 협의 후 처리 중 - 종량제 봉투 사용
	2 휴양시설은 운영상의 이유로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하지 않는다.	✓					· 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김 재 술



▲ 5. 지역주민 및 환경보호(휴양시설)